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시설(강의실) 사용 허가조건

1.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시설 운영·사용 지침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용조건: 창업, 지역혁신 활동 등 센터 운영목적과 부합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 ② 사용기간: 1회 최대 2일(1일4시간이내) / 1개월 최대 1회
 - ③ 사용신청 기간: 사용신청 10일~30일 전까지 ※ 당일예약 불가
 - ④ 제한사항 : 개인 또는 소그룹 등의 사적용도(교육, 동호회활동, 모임 등)로 사용될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사용자는 J-Space 이용객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사항 숙지 및 안내자를 배치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추후 대관이 불가하다.
4. 사용기간 중 대관시설의 설비 및 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한다.
5. 사용자는 대관장소에 행사관련으로 반입한 각종 물품 등의 보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센터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변경할 시는 반드시 센터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한다.
7. 사용자는 행사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는 사전에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행사에 따른 시설 내 도구 사용 시 사전에 센터와 협의 후 사용하고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한다.
9.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위 허가조건 또는 지침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 취소 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취소 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